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1
------	------

2017. 9. 1.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7.9.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일자리노동국장 조인동)

1. 제안이유

가.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강북근로자복지관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나. 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02년 8월 7일부터 6차에 걸쳐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강북 근로자복지관
- 소재지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 시설규모 : 연면적 1,857.15㎡(지상1층~3층)
- 개관일 : 2002. 3. 28.
- 수탁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 위탁기간 : 2014. 8. 7.~2017. 9. 24.(6차)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근로자 및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9.25. ~ 2020.9.24.)
- 위탁업무
 -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교육사업(노동인권, 노동법, 성인지 등)
-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복리향상 사업 등
-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18년) : 120,000천원(시설 관리비)

※ 운영비용은 수탁업체 부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경과

- '00.10.05.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근로자 복지공간 확충건의(시장면담)
- '01.08.07. 건물임대차계약 체결(중구 장충동 132 483.6 m^2)
- '02.03.21.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계획 수립(고용68100-413)
- '02.03.28. 근로자복지관 개관(중구 장충동 132 483.6 m^2)
- '02.08.07. 근로자복지관 관리위탁 수의계약(전국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05.08.07. 근로자복지관 1차 이전(중구 예관동 70-27, 747 m^2)
- '08.08.07. 근로자복지관 2차 이전(서대문구 충정로2가 78, 1,200 m^2)
- '12.02.22. 근로자복지관 3차 이전(은평구 녹번동 5 18동, 1,857.15 m^2)

○ 위탁계약(재계약)체결 현황

- 민간위탁계약 1차 : `02.08.07 ~ `04.08.06(2년)
- 민간위탁계약 2차 : `04.08.07 ~ `05.08.06(1년)
- 민간위탁계약 3차 : `05.08.07 ~ `08.08.06(3년)
- 민간위탁계약 4차 : `08.08.07 ~ `11.08.06(3년)
- 민간위탁계약 5차 : `11.08.07 ~ `14.08.06(3년)
- 민간위탁계약 6차 : `14.08.07 ~ `17.09.24(3년)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로자 및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
- 노동단체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조직되는 단체로서 노동전문가 확보, 조직 인프라 확보, 노동상담, 법률지원 등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기능이 노동단체의 고유기능으로서 복지관 수탁자로서 적합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에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 복지관”의 위탁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강북 근로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6차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1)에 따라 조례안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나. 강북 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은평구 녹번동에 강북근로자복지관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및 복지관의 운영 등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운영 중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행정사업 등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함.

〈강북 근로자복지관 개요〉

- 소재지 : 은평구 통일로 684
- 시설규모 : 1,857.15 m^2 (지상 3층)

층별	면적(m^2)	용도
지상 1층	683.1	노동단체 사무실, 전기실, 기계실 등
지상 2층	683.1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 노동법률지원센터, 상담실, 대강당(교육실) 등
지상 3층	490.95	노동단체 사무실, 기계실 등

- 인력현황 : 25명 (임원 3, 팀장 6, 사원 16)
- 운영내용
 - 서울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교육 및 각종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운영
 -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 회의공간 제공
 - 기타 노동자들의 권익증진과 권리구제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진행

- 지난 3년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11,219건의 노동상담 및 다양한 노동관련 진정·고소 등 법률지원,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의

운영비 등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 상세한 운영실적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참조

- 시는 매년 강북근로자복지관에 1억 2천만원의 민간 위탁금을 지원중이며, 지원한 민간위탁금은 복지관 건물의 관리비명목으로 사용하였음.

〈강북 근로자복지관 위탁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민간위탁금	120,000	114,637	120,000	91,622	120,000	61,232	10,000천원×12월 (월 관리비)

- 최근 3년간 강북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금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에 대한 집행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현재 강북 근로자복지관이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의 관리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전과 달리 현재 관리비에 유지·보수비용 미포함),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조치하였음.
- 한편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서울혁신파크 내에 위치한 현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건물이전을 요구받은 상황으로, 마포구 아현동에 소재한 (구)한국 상·하수도협회 자리에 이전을 추진중임.

※2017년 8월 현재, 증축범위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임.

- 92년 개관 후 현재까지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근로자복지관과는 반대로,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총 3차례에 걸쳐 건물을 이전하며 운영하고 있어, 시 소유건물로의 이전을 통해 운영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시는 마땅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3년째 편성한 예산을 불용, 명시이월시킨 바, 이전부지가 정해진 만큼 빠른 이전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노동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강북근로자복지관의 현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노동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과 노동관계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15년째 위탁 운영중으로, 최근 3년의 위탁기간동안 노동법률전화상담 8,560건, 노동자 법률학교 총 28회, 학생노동인권교육 총 70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양호한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수탁기관인 민주노총에서 건물 관리비용 이외의 복지관의 사업비 및 인건비에 대해 별도의 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어,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시는 향후에도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북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1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강북근로자복지관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나. 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02년 8월 7일부터 6차에 걸쳐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 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강북 근로자복지관
 - 소재지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 시설규모 : 연면적 1,857.15㎡(지상1층~3층)
 - 개관일 : 2002. 3. 28.
 - 수탁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 위탁기간 : 2014. 8. 7.~2017. 9. 24.(6차)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근로자 및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9.25. ~ 2020.9.24.)
- 위탁업무
 -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교육사업(노동인권, 노동법, 성인지 등)
 -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복리향상 사업 등
 -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18년) : 120,000천원(시설 관리비)
 - ※ 운영비용은 수탁업체 부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경과

- '00.10.05.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근로자 복지공간 확충건의(시장면담)
- '01.08.07. 건물임대차계약 체결(중구 장충동 132 483.6 m^2)
- '02.03.21.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계획 수립(고용68100-413)
- '02.03.28. 근로자복지관 개관(중구 장충동 132 483.6 m^2)
- '02.08.07. 근로자복지관 관리위탁 수의계약(전국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05.08.07. 근로자복지관 1차 이전(중구 예관동 70-27, 747 m^2)
- '08.08.07. 근로자복지관 2차 이전(서대문구 충정로2가 78, 1,200 m^2)
- '12.02.22. 근로자복지관 3차 이전(은평구 녹번동 5 18동, 1,857.15 m^2)

○ 위탁계약(재계약)체결 현황

- 민간위탁계약 1차 : `02.08.07 ~ `04.08.06(2년)
- 민간위탁계약 2차 : `04.08.07 ~ `05.08.06(1년)
- 민간위탁계약 3차 : `05.08.07 ~ `08.08.06(3년)
- 민간위탁계약 4차 : `08.08.07 ~ `11.08.06(3년)
- 민간위탁계약 5차 : `11.08.07 ~ `14.08.06(3년)
- 민간위탁계약 6차 : `14.08.07 ~ `17.09.24(3년)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로자 및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
- 노동단체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조직되는 단체로서 노동전문가 확보, 조직 인프라 확보, 노동상담, 법률지원 등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기능이 노동단체의 고유기능으로서 복지관 수탁자로서 적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별표] 서울특별시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제3조 관련)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직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노동정책담당관 복지시설팀 김민하 (☎ 2133-5426)

민간위탁 성과보고서(강북근로자복지관)

□ 민간위탁사업 개요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
- 사업내용 : 근로자 권익보호 증진 및 복지관 시설유지관리
- 추진경과
 - `00.10.05.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근로자 복지공간 확충건의(시장면담)
 - `01.08.07. 건물임대차계약 체결(중구 장충동 132 483.6 m^2)
 - `02.03.21.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계획 수립(고용68100-413)
 - `02.03.28. 근로자복지관 개관(중구 장충동 132 483.6 m^2)
 - `02.08.07. 근로자복지관 관리위탁 수의계약(전국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05.08.07. 근로자복지관 1차 이전(중구 예관동 70-27, 747 m^2)
 - `08.08.07. 근로자복지관 2차 이전(서대문구 충정로2가 78, 1,200 m^2)
 - `12.02.22. 근로자복지관 3차 이전(은평구 녹번동 5 18동, 1,857.15 m^2)
 - 위탁계약(재계약)체결 현황
 - 민간위탁계약 1차 : `02.08.07 ~ `04.08.06(2년)
 - 민간위탁계약 2차 : `04.08.07 ~ `05.08.06(1년)
 - 민간위탁계약 3차 : `05.08.07 ~ `08.08.06(3년)
 - 민간위탁계약 4차 : `08.08.07 ~ `11.08.06(3년)
 - 민간위탁계약 5차 : `11.08.07 ~ `14.08.06(3년)
 - 민간위탁계약 6차 : `14.08.07 ~ `17.09.24(3년)

○ 사업현황

- 시설명 :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 소재지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 시설규모 : 연면적 1,857.15 m^2 (지상1층~3층)

구분	연면적	사무실	노동법률센터	회의실	휴게실/창고	기타
면적(m^2)	1,857.15	791.96	59.4	233.8	66.64	805.92

- 개관일 : 2002. 3. 28.
- 수탁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 위탁기간 : 2014. 8. 7.~2017. 9. 24.(6차)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근로자 및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추진실적

사업명	세부항목	내 용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사 업	노동 법률 상담	○ 전화상담 : 8,560건 ○ 내방상담 : 1,558건 ○ 인터넷 상담 : 1,101건
	법률 지원	○ 노동부사건(진정·고소 등) : 대리 195건 , 대행 92건 ○ 노동위원회사건(구제신청 등) : 대리 241건, 대행 113건 ○ 근로복지공단사건(산재신청 등) : 대리 56건, 대행 26건 ○ 법원 사건(소송, 각종 신청) : 대행 109건 ○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 152건
노동교육 사 업	노동법 교육	○ 노동자 법률학교 : 총28회, 연인원 1,522여명 참석 ○ 청년학생노동인권교육 : 총70회, 연인원 2,235명 참석 ○ 서울본부 법률학교 : 6회 405명 참석 ○ 주요 이슈별·시기별 노동법교육 ○ 외부교육 강사 참여 : 총 301회
	기 타	○ 노동자 법률지원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습노무사 교육「노동자의 벗」매년 진행 신규노무사 138명 참여
법·제도 개선사업	노동행정 사 업	○ 노동행정감시 : 노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사건처리 실태 분석 ○ 지노위사업위원회 : 서울지노위 구제신청 및 조정사건 현황파악 및 노동자 권익구제 지원
복지후생 증진사업	각종 행사	○ 5.1 노동절, 최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 캠페인, 노동자 등반대회, 서울지역노동자가을체육대회 개최 등
	기획사업	○ 매년 차별철폐 한마당 개최 연인원 2,010명 참여 ○ 노동자 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 거리캠페인 실시(2016) ○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 : 서울셔틀버스노동자, 서울가락시장 노동자 ○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권리 바로알기 거리캠페인 및 거리 상담 진행 ○ 학교비정규직, 지자체비정규노동자, 등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실태 조사 사업 및 상담 진행

○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실적

(단위:천원)

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비	120,000	114,637	120,000	91,622	120,000	61,232

□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

○ 성과평가 결과 요약

- 근로자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동상담 서비스는 인근지역을 벗어나 상담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운영 필요
- 노조원 뿐만 아니라 식당, 청소, 알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인 취약계층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개선계획

- 자치구 근로자복지센터와의 연계, 서울지역 법률지원사업 시스템 완성 등
-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 대변사업 집중 시행
- 계층과 내용의 차별성에 입각한 다양한 근로자 교육사업 전개